

임실군 의회 공고 2026 - 7호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3월 24일

임실군의회 의장인



1. 제정이유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나. 등록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6조)
- 라.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마. 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예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법인 또는 기관·단체는 다음을 참고하여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2026년 3월 29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전자우편·직접방문
 - 1) 주 소: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의회(의회사무과)
 - 2) 전 화: 063-640-2883, 팩스 063-640-2699
 - 3) 전자우편: charity81@korea.kr

4. 제정안: 붙임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실군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이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하며, 대학원생은 제외한다)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3. "보호자"란 대학생의 부모 또는 대학생의 생계를 책임지며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등록금"은 대학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로 수업료, 입학금에 한정한다.
5. "거주요건"이란 등록금 지원 신청일 현재 임실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6. “다자녀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등록금 지원 등) ①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등록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금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지급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등록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① 등록금 지원대상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학사과정의 정규재학기간 내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업을 위하여 고등교육기관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대학생의 경우에도 제2조제5호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③ 등록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자녀가정, 장애 학생을 우선하여 지원한다.

④ 등록금 지원의 중복을 방지하고 공공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등록금 지원 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⑤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성적 7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의 성적요건을 갖춘 대학생을 지원한다. 다만,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장애 학생은 성적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이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학사과정 졸업 후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재진학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금액 등) ① 등록금 지원 금액은 대학생에게 부과되는 등록금 비용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 실제 본인부담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2. 대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3. 그 밖의 방법으로 등록금을 지원받는 금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대가성 장학금(일정한 근로, 의무, 복무, 봉사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지급되는 장학금)
2. 일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③ 지원 횟수는 소속 학과의 정규 학기 수 범위에서 최대 12회까지 지원하며, 타 대학 및 동일 대학에 편입하거나 재입학한 경우에도 총 지원

횡수는 누적 관리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고 지원 금액의 상한과 지원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신청방법) 등록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학생 등록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대학생 등록금 지급(미지급)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3. 국가장학금 신청확인서(한국장학재단 발급)
4. 그 밖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계획 공고 시 지정하는 서류

제8조(지원자격 확인 등)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등록금 신청 학생의 지원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는 사람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당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등) 군수는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한다.

1. 해당 학기 재학 중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2. 제5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에게 지급된 경우
3. 다른 법령이나 사업을 통해 동일한 등록금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27학년도 상반기부터 적용한다.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등록금 지원에 따른 예산 소요

나. 관련조문

- 제4조(등록금 지원 등) 제1항 및 제2항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전체

- 지원금액 : 1인당 학기 100만원, 연 2회
- 지원규모 : 학기당 200명, 연 2회

나. 추계 결과

- 연간 소요예산 : 4억원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 분	산정기준	예상소요액	비 고
학기 소요액	100만원×200명	2억원	
연간 소요액	학기 소요액×2학기	4억원	

3.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편성

4. 작성자

- 행정지원실장 염진선
- 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7년)	2차년도 (2028년)	3차년도 (2029년)	4차년도 (2030년)	5차년도 (2031년)	계
세 입						
세 출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장학금및학자금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재원 조달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2,00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4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련법령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보호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교육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10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하며,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각각 「학교보건법」 제4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한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이란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진로 상담 및 경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매체의 개발 및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가.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 나.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전문학교·실용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4. “근로자”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기능대학”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으로서 학위과정인 제40조에 따른 다기능기술자과정 또는 학위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면서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